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049,109,035 | 31,473,271 |
| 일반회계 | 939,603,695 | 28,188,111 |
| 특별회계 | 109,505,340 | 3,285,16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6,502,118 | 1,095,064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6,502,118 | 1,095,064 |
| 기타특별회계 | 73,003,222 | 2,190,097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834,267 | 25,028 |
| 자활기금특별회계 | 474,747 | 14,242 |
|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10,333,000 | 309,99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23,678 | 6,710 |
|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957 | 29 |
|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| 1,953,117 | 58,594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17,197 | 6,516 |
|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| 1,047,600 | 31,428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57,918,659 | 1,737,56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하고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